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97
----------	------

발의년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윤영애 의원

김원규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현 의원

이만규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정천락 의원

홍인표 의원

## 1. 제안 이유

가. 학생 도박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학생 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예방교육,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를 제9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

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u></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u>5년</u>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u>3년</u>----- -----.</p> <p>②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신 설>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7조 (생략)

제9조~제11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붙임)

##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7. (생략)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 17.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3.~ 8. (생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